

7. 인세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출판부(이하“출판부“라 한다)가 간행한 도서의 인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차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지급기준) ① 출판부에서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전임교원, 연구기관 및 편찬위원회의 저술, 편저 등을 간행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세를 지급한다.(2021.6.22. 개정)

1. 초판 : 정가의 12%
2. 증판 : 정가의 17%

다만, 번역서 및 위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.

1. 초판 : 정가의 10%이내
2. 증판 : 정가의 15%이내

②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로 저술, 간행한 도서의 경우에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(2021.6.22. 개정)

제3조(지급방법) ① 인세는 발행부수의 2분의1에 대하여 도서발간과 동시에 우선 지급하고, 나머지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정산 지급한다.

② 교재대가 일괄 징수되는 교양과목 교재와 판매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도서의 인세는 발행부수 전체에 대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
③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인세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4조(공제) ① 편찬 또는 저작을 위하여 지급된 집필 착수금 및 편집비 등은 인세에서 공제한다.

② 저자에게 무료 증정하는 부수는 20부 이내로 하고, 인세지급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에서 이를 공제한다.

제5조(특수도서) 제2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특수도서에 대하여는 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